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백혜련 · 전종덕
김병주 · 최혁진 · 김문수
남인순 · 전진숙 · 임미애
김남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22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(2026년 2월 2일 기준) 중 63명으로 그 비율은 21.3%에 그치며,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명 중 36명으로 14.4%에 불과함. 이는 OECD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33.8%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.

제21대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‘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’를 두어 국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고,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한 국회 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‘여성의원 전원회의’를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따라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

자 하는 것임(안 제46조의4 신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4(여성국회의원협의회) 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위한 성평등 입법,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둔다.

② 여성국회의원협의회는 여성인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, 부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별(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제외한다)로 1명을 둔다.

④ 여성국회의원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을 준용한다.

⑤ 여성국회의원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한다.

⑥ 여성국회의원협의회는 성평등 증진과 관련하여 의장이나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장이나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
⑦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6조의4(여성국회의원협의회)</u> <u>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위한 성평등 입법,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둔다.</u> <u>② 여성국회의원협의회는 여성인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u>③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, 부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별(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제외한다)로 1명을 둔다.</u> <u>④ 여성국회의원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을 준용한다.</u> <u>⑤ 여성국회의원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한다.</u>

⑥ 여성국회의원협의회는 성평
등 증진과 관련하여 의장이나
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
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장이나
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를
존중하여야 한다.

⑦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구성
·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
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
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
한다.